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 종합검사 수검 기간을 63일에서 122일로 확대하고,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전후 각각”을 “전 90일 이내, 후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발급일자	처리기간	즉시
신청인	성명(명칭)		주민(사업자)등록번호	
	전화번호			
	주소			
자동차	등록번호		차명·형식	
	검사유효기간(명령이행기간) ~			
신청내용	연장(유예)신청기간 ~			
	연장(유예)사유		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의2제2항 및 「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」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합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검사의 유예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. 연장(유예)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 과 종합검사기간 등) ① (생 략)	제9조(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 과 종합검사기간 등) ① (현행 과 같음)
② 자동차 소유자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(이하 “종합검 사기간”이라 한다)은 검사 유효 기간의 마지막 날(제10조에 따 라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연 장 또는 유예된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) <u>전후 각각 31일</u> 이내로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전 90일 이내, 후</u> 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